

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6-19호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「사료·사료원료·기구·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」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-24호, 2022.8.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7일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사료·사료원료·기구·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

- 개정 2001. 9. 4.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-8호
- 개정 2003. 11. 12.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-11호
- 개정 2007. 2. 23.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-13호
- 개정 2011. 6. 15.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-24호
- 개정 2011. 7. 25.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-99호
- 개정 2013. 3. 23.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-5호
- 개정 2014. 1. 7.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-4호
- 개정 2016. 12. 14.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-104호
- 개정 2019. 11. 21.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-82호
- 개정 2022. 8. 4.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-24호
- 개정 2026. 5. 27.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6-19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, 사료원료,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

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사료"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,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.
2. "사료원료"란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(농식품부 고시)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품명을 말한다.
3. "건초"란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(농식품부 고시)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6-19호, 2026.5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"선적일"은 선하증권(Bill of Loading)상 선적일(ON BOARD DATE)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수출국에서 선적하 물품(선하증권상 선적일이 시행일 이전인 물품을 말한다)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

사료, 사료원료, 기구, 건조 및 깔짚 등의 범위

1. 사료(사료원료·건조)

구분		품명
섬유질류	섬유질 사료	○ 목초, 야초, 수엽류, 고간류(귀리짚, 밀짚, 벼짚, 보릿짚, 수수대, 옥수수대 등), 사료용 근채류, 풋베기 사료작물(새싹보리, 수단그라스, 자운영, 청예갈대, 청예밀, 청예보리, 청예벼, 청예수수, 청예옥수수, 청예유채, 청예피, 청예호밀 등), 옥수수 속대 ※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,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것
	섬유질 가공사료	○ 섬유질사료를 분쇄, 가열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 ※ 분쇄한 것, 펠렛,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
단백질류		○ 어분(조류 및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), 우모분, 제각분, 육분, 육골분, 혈분, 육가공부산물,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,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, 수지박, 동물성발효사료, 계란분말, 육포
유지류		○ 우지, 돈지, 양지, 닭기름
기타		○ 양봉용 벌꿀(벌꿀이 함유된 제품 포함)·화분(꿀벌이 생산한 것에 한하며, 화분이 함유된 제품 포함)

2. 기구, 깔짚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
가. 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용기, 깔짚 등

나. 소비